

산업자원부고시제2003 - 53호

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의 상표 제품과 비상표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비상표제품에 관한 표시 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 공급자의 상표를 풀, 캐노피, 주유기의 관련시설, 이동판매 차량 또는 기타 영업장소에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2. “비상표제품”이라 함은 상표제품 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한다.
4. “외부표시장소”라 함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의 입구 전방에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내부표시장소”라 함은 주유기의 관련시설로

서 계량기관리통합고시 제3-15-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부피 지시기구의 하단으로 차량 운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표시의 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표시의 적용범위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가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비상표제품을 표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표시 기준 및 방법)

- ①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야간에도 또한 같다.
- ② 비상표제품을 표시하여야 하는 장소는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으로 한다.
- ③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휴가 후유증, 자동차도 있다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온 자동차에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었다고 점검을 소홀히 하면 자동차의 수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살펴보자.

♡세차는 기본

우선 날씨 좋은 날을 택해 전문세차장에서 하체까지 스팀세차로 깨끗이 씻어낸다. 바닷가에서 모래밭을 헤집고 다녔다면 한겨울에 염화칼슘 범벅이 된 눈길을 달린것과 다르지 않다. 바닷물에 있는 소금기가 차체를 부식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휠하우스 안 쪽과 머물러 주변은 신경써서 흙덩이를 제거해 준다. 비포장도로에서 돌이 바닥에 닿아 철이 벗겨지거나 녹이 스는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녹을 밀어낸 후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준다.

♡숨어있는 습기를 찾아라

외부청소가 끝난 후에는 햇빛 아래로 차를 옮겨 보닛과 트렁크, 앞뒤 문 등을 열어 실내를 말린다. 실내에는 먹다 흘린 음료수와 음식을 찌꺼기가 부패하고, 트렁크에는 각종 레저장비와 음식물, 해수욕장에서 입었던 옷이나 수건을 넣고 다녀 악취가 배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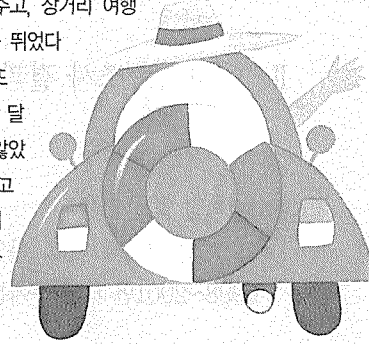
바닥의 매트와 트렁크에 있는 스페어타이어도 꺼내 깨끗이 닦아 말린다. 이런 곳에 숨어있는 습기는 곰팡이 번식을 부추겨 귀퀴한 냄새와 변색의 원인이 된다.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구석에 숨어 있는 바닷가 모래를 빨아내고 휴가흔적을 모두 지운다.

♡엔진룸 점검은 필수

보닛을 열고 오일, 배터리, 벨트 등 엔진룸 점검도 해야 한다. 자동차에서 오일은 부품이 원활하게 맞물려 돌도록 돕거나 유압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오일로, 그 양이 최대와 최소 사이에 있어야 정상이다.

카엔진오일은 색깔만으로 교환주기를 판단하기 힘들다. 주행거리 1만km를 전후로 바꿔주고, 장거리 여행으로 한꺼번에 몇 천km를 뛰었다

면 조금 빨리 교환한다. 또 먼지나는 비포장길을 많이 달렸다면 교환시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새것으로 갈아주고 에어클리너도 함께 교환해주는 것이 오래도록 조용한 차를 타는 비결이다.



1. 외부표시장소 :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
2. 내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 : “무상표제품”
- ④ 각 장소에 표시할 글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외부표시장소 : 세로 40cm, 가로 30cm, 굵기 6cm
 2. 내부표시장소 : 세로 10cm, 가로 7cm, 굵기 1cm
 3. 이동판매차량 : 세로 15cm, 가로 10cm, 굵기 1.5cm
- ⑤ 글자의 색깔은 보라색(pantone color 2425) 바탕위에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 ⑥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 또는 “무상표제품”을 표시할 때는 고정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외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한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5항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